##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35 발의연월일: 2024. 10. 10.

발 의 자:이상식・이건태・이기헌

이병진 · 김현정 · 민병덕

서미화 • 박선원 • 이강일

김문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 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에 제7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7(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사업) 공사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체의 관할구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5조의7(다른 지방자치단체 관
	할구역의 사업) 공사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
	단체 간에 상호합의를 거쳐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
	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
	정한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4조제5호에 해당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